##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5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박상혁 · 김준형 · 이해식

김주영 · 염태영 · 이연희

한민수 어 영 · 정진욱

강선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 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1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8(관람자 확인) 공연자는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자가 제12조의8에 따른 관람자 확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2조의8(관람자 확인) 공연자는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입		
	<u>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u>		
	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		
독) (생 략)	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자가 제12조의8에 따른 관		
	람자 확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